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종합감사 -

2022. 10. .



♠ 처분요구일람표

1.	사업소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 부적정 (시정)	3
2.	○○직 직원 ◎○○○○수당 지급 부적정 (통보)	5
3.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미이행 (주의)	9
4	■■■■■■■■■■ 임대차계약 등 부적정 (시정)	12
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15
6	국외여행 여비 정산 부적정 및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 (시정, 통보)	17
7	관사 임차료 지급 부적정 (시정)	20
8	관사 임차보증금 채권 확보조치 소홀 (시정)	22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사업소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경제진흥원’ 이라 한다)은 매년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에 의하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76조(납세지), 제81조(세율) 및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에 의하면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에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산하여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지),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및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에 의하면 사업소분 주민세액의 100분의 10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하여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진흥원에서는 본점(☆☆), 지소(□□, ◇◇), ☆☆☆☆경제지원단(○○) 및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각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북부지소(☆☆, 2017.6.부터 운영)와 ★★★★★경제지원단(◎◎, 2019.10월부터 운영)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 총 7건(북부지소 5건, ◇◇◇◇경제지원단 2건)을 매년 8월말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앞으로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고, 미신고·미납부한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시 정)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직 직원 ◇◇◇◇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경제진흥원’ 이라 한다) ★★★★★ ○○○○팀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 등 보수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직제 및 정원규정」 제11조(직렬)에 의하면 사무처 직원은 □◎직, □◎직, □◎직, □◎직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보수규정」 제20조(수당의 지급)에 의하면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직원의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표5의 기준에 의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제진흥원 제◇◇차 이사회 개최 결과보고(20◇◇.◇◇.◇◇) 및 회의자료(20◇◇.◇◇.◇◇)에 의하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급여체계 적용을 받는 ☆☆직의 임금 수준 향상과 ▼▼직과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직에 적용하고 있는 보수규정 적용기준(고용노동부 ※※☆☆원 규정 준용)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2021.2.25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보수규정」 제4조(봉급)를 개정하였다.

따라서 경제진흥원에서는 개정된 보수규정 기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에 따라 §§직 직원에게 정근수당, 정근수당의 가산금, 직급보조비 등은 지급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는 관련규정이 없어 ☯☯직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직 직원 총 5명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규정에 맞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통 보)
- ② 「인사규정」 제28조의2에 따라 관련자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미이행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경제진흥원’ 이라 한다)에서는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평정,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인사규정」 제22조 및 제36조에 의하면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직원 중에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 순으로 승진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장이 행하고,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인사평정지침」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평정결과는 인사관리 전반에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승진, 승급 등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며,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승진 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근무 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자,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순으로 선 순위자를 결정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진흥원에서는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 순으로 승진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22년 직원 승진인사를 앞두고 경제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승진후보자들의 당해 직급 전체에 대한 평정자료를 요청받고, 직급별 승진 최저소요기간이 도과한 직원들의 3년간 평정자료 집계표를 원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20㉠㉠. ㉠. ㉠㉠. 20㉡㉡년 인사위원회 개최계획 및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하면서 ㉠㉠㉠을 사무 ㉠급에서 ㉠급 승진대상자로, ☆☆☆를 ㉠급 승진대상자로, □□□를 ㉠급 승진대상자로, ♣♣♣, ㉠㉠㉠, ㉡㉡㉡을 ㉠급 승진대상자로 명시하였고, 위 사람들의 승진후보자 명부만 작성하고 승진 최저소요기간이 도과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야 할 나머지 사람들(㉠급 승진후보자 ㉠명, ㉡급 승진후보자 ㉡명¹⁾)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 ㉢.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인사위원 중 ㉢명이 규정에 명시된 대로 승진 예정인원의 2배수로 하여 승진심사를 요청하자 위 관서에서는 명부 순위가 기재된 정상 승진후보자 명부가 아닌 ㉢급 승진대상 후보자 ㉢명, ㉣급 승진대상 후보자 ㉣명, ㉤급 승진대상 후보자 ㉤명, ㉥급 승진대상 후보자 ㉥명의 입사일, 해당직급 임용일, 승진 최저소요기간 경과여부, 3년간 평정자료 집계를 기재한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진심사를 진행하였고,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직원들이 승진대상자로 결정되었다.

특히 ㉢급 승진후보자인 ㉢㉢㉢의 경우 정상 승진후보자 명부로 보면 명부 순위 ㉢위임에도 ㉠㉠㉠을 ‘연번 ㉢’에 기재하여 마치 명부순위가 ㉢위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결국 ㉢㉢㉢이 ㉢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경제진흥원 승진 인사에 대한 공정성이 저해되고 내부 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1) ㉢급 및 ㉣급 승진대상자는 승진 최저소요기간 도래자가 1명씩 밖에 없어서 1명씩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 ① 앞으로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인사규정」 등을 준수하여 승진임용 등과 관련하여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인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주 의)
- ② 「인사규정」 제28조의2에 따라 관련자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임대차계약 등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경제진흥원’ 이라 한다)은 20㉠㉠. ㉠. ㉠. 진흥원 건물 옥상 ㉠㉠㉠㉠㉠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대표이사 ㉠㉠㉠)과 아래 [표] 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 설치 임대차 계약 현황

(단위 : m², 천 원)

소재지	층수	면적	용도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비고
구미시 ㉠㉠㉠㉠ 7	7	302.4	▽㉠㉠㉠	20㉠㉠. ㉠. ㉠. ~ 20㉠㉠. ㉠. ㉠.	㉠㉠, ㉠㉠	진흥원 광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재산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면 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소관재산 현황을 정확 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임대관리규칙」 제3조에 의하면 진흥원의 임대 보증금은 감정가 및 인근 건물 임대사례 등을 비교하여 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제21조에 의하면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계약종료일 이전 ‘을’ 의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반출하여야 하며 목적물을 계약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부터 실제로 명도 또는 원상회복 완료일까지 관리비와 임차물건의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수 계산하여 ‘갑’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진흥원은 월 임대료를 적정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시 원상복구 및 원상회복 완료일까지 관리비와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임차인 □□산업(대표이사 ㉸㉸㉸)과 20○○. ○. ○○. 진흥원 ○○ ○○○설치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리적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면 광고효과가 미미한데도 광고 적정성 및 효과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경제진흥원 광고로 월 임대료를 대체하였고,

같은 해 ○○. ○○. ○○○ 설치 완료 후 임차인과 전광판 설치자인 (주)◆◆◆◆◆와의 분쟁 등으로 준공되지 않아 월 임대료로 대체하기로 한 경제진흥원의 광고가 송출되지 못하여 임대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더욱이 위 관서에서는 20○○. ○○.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복구 및 원상복구 미 이행 시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원상복구 및 월 임대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채 방치 하였다.

그 결과 ○○ ○○○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를 야기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 ① 앞으로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임대관리규칙」 등을 준수하여 임대차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주 의)
- ②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 미 이행으로 발생한 금액 약 ◆●,◆◆◆천 원을 징수 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을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시 정)
- ③ 「인사규정」 제28조의2에 따라 관련자 ●●●과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경제진흥원’ 이라 한다)에서는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집행지침」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Ⅱ. 주요항목별 집행지침 3.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로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동일한 날짜와 시간에 동일한 업체에서 기념품과 특산품 등을 50만 원 이상 구입하였음에도 50만 원 미만으로 나눠서 결제하여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았고, 유관기관 등에 기념품과 특산품 등을 지급하면서 지급관리대장을 관리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 통 보

제 목 국외여행 경비 정산 부적정 및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경제진흥원’ 이라 한다)에서는 국외 여행을 하는 임·직원들에게 경비 지급과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있다.

1. 국외 여행 경비 정산 부적정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여비규정」 제3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진흥원 임·직원의 경비지급에 관하여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2017. 7. 26. 시행, 대통령령 제28211호) 제31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임·직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는 20△△. △. ▽부터 20○○. ×. □□까지 ◇박 □일 일정의 국외 여행 여비를 지급하면서 숙박비가 ◇박 과다하게 청구되었음에도 정산을 소홀히 하여 ●●,ⓂⓂⓂ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¹⁾(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 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 국외출장시의 여비 2. 운임 다. 에 따르면 2018. 11. 1. 부터는 출장자 개인에게 항공마일리지¹⁾가 적립되므로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에 따른 신고 절차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진흥원에서는 임·직원이 업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신고 절차 등이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경제진흥원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임·직원 ○○명이 ◆◆회의 국외 여행을 하면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 ㎣㎣㎣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1) 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 ① 부적정 하게 지급된 여비는 부당 수령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을 환수하고,(시 정)
- ② 또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신고 절차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 보)
- ③ 「인사규정」 제28조의2에 따라 관련자 ■■■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관사 임차료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경제진흥원’ 이라 한다)에서는 임직원의 복리후생에 이바지하고자 2011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사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임직원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진흥원 「관사관리규칙」 제4조에 따르면 임차관사의 유지에 있어 진흥원은 보증금 500백만 원과 임대료 30만원 이내 및 채권보전비용을 부담하며, 이외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사 계약담당자는 관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규칙에 따라 면적 105.8㎡(32평) 이내 및 보증금 500백만 원 임대료 3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외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경제진흥원에서는 20○○. ○○. ○○. ○○○시 ○○○동에 있는 ○○○○
○○○ ○○○호를 □□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소유자와 보증금
□,○○○만 원 임대료 □□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11. 11. 1. 제정되고 2020. 12. 30. 개정되기 전의 「관사관리규칙」에는 임차관사의 규모, 임차보증금, 월임차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하였으나, 2020. 12. 30. 「관사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임차관사의 면적은 105.8㎡(32평), 보증금 500백만 원, 임대료는 30만원 이내로 임차

조건이 변경되어 위 임대차계약 조건과 「관사관리규칙」의 조건이 서로 배치되게 되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는 20~~000~~.~~000~~.~~000~~. 위 관사에 대해 연장계약을 체결 하면서 개정된 관사관리규칙에 따라 임차료 30만 원 이외의 금액인 임차료 00만 원은 사용자가 부담¹⁾하게 해야 함에도 기존 조건대로 임차료 00만 원으로 지원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규정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관사 임차료 0,000,00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관사 월임차료 30만원 이외의 금액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 정)

1) 다른 임직원 관사의 경우 실제 임차료가 30만 원 이상으로 30만원 이외의 금액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음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관사 임차보증금 채권 확보조치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경제진흥원’ 이라 한다)은 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진흥원 「재산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경제진흥원 「재산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관리자는 소관재산을 진흥원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경제진흥원 「관사관리규칙」 제4조에 따르면 관할지역 부서장의 책임하에 임차관사를 진흥원의 재산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진흥원에서는 임차관사를 관리하면서 관사를 진흥원의 재산에 준하여 관리하고 관사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 강구, 채권 확보조치 및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편 경제진흥원에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진흥원 명의로 ○○개소의 관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는 ○○시 ○○동 ○○동 ○○동-○, ○○○ ○○○호 관사에 대해서만 전세권설정을 하였고,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채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 선순위 채권 설정 금액이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관사로 사용하였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가등기 되어있는 주택을 임차하는 등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재정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관사로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임차보증금 채권 확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관사에 대해 전세권 설정 등 채권 확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 정)